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63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윤건영・임호선・한병도

박지원 • 박해철 • 이상식

문금주 • 노종면 • 복기왕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체육시설 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태권도장 등 소규모 체육 시설업자에 대해서는 보험 의무 가입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소규모 체육시설은 아동·청소년 등 저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 부상 등의 위험이 더 큼에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체육시설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이용자와 체육시설업자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을 제고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내 사고에 대한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	제26조(보험 가입)
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	
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u>다만</u> , 문화체육관광	<u><단서 삭제></u> 이 경우
부렁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
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하는 소
<u>아니하다.</u> <후단 신설>	규모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